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2222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종교단체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중

담당변호사 안창삼

피고1. 재단법인 C

2. D

3. E

4. F

변론 종결2019. 10. 10.

판결 선고2019. 10. 3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41㎡에 관하여 2019. 7.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D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0.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0. 12.

5. 접수 제384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3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0.3㎡에 관하여 2000.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라.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재단법인 C

1)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기판력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22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6. '피고 재단법인은
강원도 강릉시 G 대 761.3m²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1. 10. 접수 제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강릉시

G 대 120.3m²'는 2002. 12. 23. '강원도 강릉시 H 대 641m²'를 합병하여 '강릉시 G 대 761.3m²'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명한 대상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 1. 10. 접수 제9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합병 전 '강원도 강릉시 G대 120.3m²'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합병 후 '강원도 강릉시 G 대 761.3m²' 중 641m²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선결관계 또는 모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재단법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재단법인은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D, E, F

피고 D, E, F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또는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박현숙

별지